

# 이천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996. 10. 30.  
내무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6년 10월 10일 이천시장
- 나. 회부일자 : 1996년 10월 1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7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  
제1차(96.10.23) 내무위원회 상정  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)

### 가. 제안이유

- 현행 이천시고문변호사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거 변호사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개정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- 시장은 2인이하의 고문변호사를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)
- 고문변호사는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,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함(안 제3조)
- 행정, 민사소송의 변호사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대법원규칙으로 일원화(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0,000원의 수당지급)(안 제4조)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안봉환)

-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소송수행에 따른 수임료 및 수당을 이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제 6조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나,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일부 상향 조정하여 고문 변호사의 소송수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소송물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행정 및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조정하고,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수당도 20만원 으로 상향 조정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## 5. 토론요지 : 생략

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만장일치)

## 7. 기타사항 : 없음